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2
----------	-----

제안년월일 : 1994. 1. 28 .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 제안 이유

- 가. 도 직제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의 삭제 및 변경
- 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중에 해임 및 보임할시 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재무국을 삭제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중 농림수산국을 농수산국으로 명칭변경 (안 제3조)
- 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중 해임 및 보임할 경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함. (안 제9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내무국” 다음에 “재무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5호 가목중 “농림수산국”을 “농수산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해임·보임”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중 해임 및 보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